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
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
세입·세출에 이입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 - ④ (생 략)</p> <p>⑤ <u>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 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</u></p>
<p>제34조(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)</p> <p>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는 임야 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.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. 취득.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.</u></p>	<p>(삭 제)</p>
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. 세출) ① <u>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공유재산(공유림 제외)의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 %</u></p> <p>2. <u>공유임야 매각대, 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 %</u></p>	<p>(삭 제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3. 국유재산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, <u>변상금등 :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</u> <u>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%</u></p> <p>4.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재원 <u>②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</u> <u>유림구입비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</u> <u>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</u> <u>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36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</u> <u>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</u> <u>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(삭 제)</p>